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057

발의연월일: 2025. 3. 18.

발 의 자 : 엄태영 · 김은혜 · 김정재

윤한홍 • 이만희 • 박정하

강명구 • 고동진 • 김태호

김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 이내부터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가액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

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OCED 회원국 평균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며, 주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므로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위한 주택 취득세 지원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

법률 제 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	제36조의5(출산・양육을 위한 주
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	① 2028년 12월 31일
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	
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	
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	
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	
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	
택을 취득하는 경우(출산일 전	
1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한 경	
우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	
우에는 그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	
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	
을 공제한다.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